

지역화 및 구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

1. 지역화(Zoning)를 위한 고려사항

가. 수출국의 영토 내에 예찰 활동을 통해 특정 질병에 대한 다른 위생 상태에 있는 수산동물 아집단이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나. 수출국의 영토 내 다른 지역과 역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수출국 지역 인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1) 수출국 검역기관에 대한 평가
- 2)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위험평가 결과
- 3) 수출국의 질병 발생상황
- 4) 그 밖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에서 정한 사항

라. 수출국에 지역화 평가 결과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한다.

마. 지역화 인정이 결정된 경우, 수출국 검역기관과 공식 합의를 체결한다.

2. 구역화(Compartmentalization)를 위한 고려사항

가. 수출국의 영토 내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시설에 포함된 수산동물의 아집단으로 구성된 구역이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나. 수출국이 해당구역의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조치를 통해 해당 구역이 역학적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한다.

다. 수출국이 운영중인 예찰 및 모니터링 계획이 해당 질병에 대한 수산동물의 아집단의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한다.

라. 수출국이 운영하는 해당 구역 인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1) 수출국 검역기관에 대한 평가
- 2)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위험평가 결과
- 3) 수출국의 질병 발생상황

마. 수출국에 구역화 평가결과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한다.

바. 구역화 인정이 결정된 경우, 수출국 검역기관과 공식 합의를 체결한다.